

##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지원

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청소년의 해외 견문을 넓히고 국가 간 친선 강화를 위해 소년소녀합창단의 해외공연을 지원(2026년도 한시사업)하고자 합니다. 해외공연 계획이 있는 단체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.

### □ 사업목적

- 국가 간 친선,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제고 및 합창단원의 성장

### □ 지원내용 및 규모

- 지원내용 : 합창단원 및 지도자, 인솔자의 해외 이동(교통비), 체류비 등 해외공연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중 일부
- 지원기간 : 2026년(단년)
- 지원규모 : 최대 1억 원

### □ 신청자격

- 신청대상 : 단체
- 자격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
  - 공모 마감일 기준 유효한 법인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음악분야 민간 단체(국·공립 단체 제외)
  - 소년소녀 단원으로만 구성된 합창단
    - ※ 소년소녀 인정 기준 : 소년법 제2조에 따른 '19세 미만인 자'로 공고마감일(2026.4.13.) 기준 만 19세 미만(2007.4.14. 이후 출생자)인 자
    - ※ 외국인 단원이 일부 포함된 경우,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여부 결정
    - ※ 합창단원 외 연주자 등 참여인력은 성인으로 구성 가능

### □ 제외대상

-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<지원신청 제한> 및 <지원신청 부적격자>에 해당하는 단체 [[바로가기](#)]
- 동일 및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유관 기관\*의 지원을 받는 단체
  - ※ 국제교류재단, 예술경영지원센터,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, 각 지역 문화재단 등
-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지원 사업(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, 국제협업지원,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, ARKO사업연계해외진출지원) 선정 단체
  - ※ 2025년-2026년 국제협업지원 및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다년 사업 선정 단체 포함

## □ 신청기간

- 2026년 3월 30일(월) ~ 4월 13일(월) 15:00 까지

## □ 신청방법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(이메일, 우편, 방문 접수 불가)
  - ※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주체의 이력 등 정보 현행화 후 신청 가능
  - ※ 접수 마감일의 정해진 시간 이후 신청 접수 불가(예외 적용 없음)

## □ 제출서류

- (필수) 2026년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지원신청서
- (필수) 해외공연 확정 서류(해외기관 초청장, 공연장 대관승인서류 등)
  - ※ 이메일 및 대화내용 캡처본, 서명/날인되지 않은 서류, 본 지원사업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서류 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
- (선택) 합창단의 역량, 활동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 또는 연습영상 5편 이내
  - ※ 지원신청서 내 온라인 링크(URL) 기재(영상 파일 제출 불가)

## □ 선정방법

- 서류심의

## □ 심의기준

심의기준	평가항목	세부평가내용	가중치(%)
사업수행 역량 (30%)	신청단체의 해외공연 추진역량	· 신청단체가 해외공연을 수행할 역량(신청단체의 활동 이력, 기획 및 국제교류 역량)을 갖추고 있는가? · 합창단원에 대한 인솔 및 안전관리 계획을 갖추고 있는가?	15
	합창단의 예술적 역량	· 합창단이 해외 공연에 적합한 예술적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, 예술적 역량이 우수한가?	15
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(30%)	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	· 해외공연 목적 및 목표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? · 해외공연 국가, 도시의 선정 배경, 섭외 상황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? · 공연계획을 포함한 전체 일정 및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? · 홍보 및 기록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?	20
	예산편성의 합리성	· 재원조달계획(지원금, 자기부담금 등)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가? · 사업목적과 계획된 활동에 맞게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고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?	10
한국 문화 예술의 가치 확산 기여도 (40%)	국가 간 친선 및 한국 문화예술의 인지도 제고	· 해외공연 대상 국가 및 도시와 친선을 강화하고 한국 문화 예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?	20
	합창단원 성장에의 기여	· 해외 공연을 통해 합창단원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? (견문, 예술성 등)	20

## □ 지원조건

- e나라도움(www.bojo.go.kr)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·정산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「보조금 운영관리규정」, 「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집행 및 기준 안내서」 의무사항 준수
- 보조사업자는 미성년 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해 보호 의무를 지며, 미성년자의 보조사업 참여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
  - \* 보조사업 선정 이후, 미성년 참여자별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필수
-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전담인력 1인 배치, 여행자보험 가입, 안전 교육 이행 및 서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
- 보조사업자는 아동·청소년 관련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함(단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,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에 해당할 경우에 한함)
- 기타 보조사업 의무사항 및 보조금 교부 조건

구분	내용
사업자 유지 의무	·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지원신청한 사업자를 유지, 사업 수행 기간 이내 휴·폐업한 경우 지원결정액 전액을 반납해야 함 (부득이한 사유 제외) * (부득이한 사유) 천재지변, 재해, 투병 등 사유에 따라 지원금 환수 여부 및 환수 규모 결정
예술인 고용보험 신고·납부 의무	·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에 따라, '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'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, 보험료 납부 등 의무 이행
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	·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.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
표준계약서 사용	·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(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)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함
정산보고서 검증 의무	· 보조금 집행 내역 일체를 외부 회계법인(사업별 위원회에서 지정한 회계법인)을 통해 검증받아야 함
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명시	· 각종 홍보물(현수막, 포스터, 전단, 팸플릿 등)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"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"임을 기관CI와 함께 명시해야 함

## □ 2026년 예산

- 3억 원 (최대 1억 원 × 3개 단체)

## □ 문의처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류협력팀 02-760-4554, 4558
- \* 문의 가능 시간 : 월~금 10:00~17:00(점심시간 제외)

## 지원신청 유의사항

### [공통사항]

- ▶ 문화예술진흥기금 **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** 부탁드립니다.  
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